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605

발의연월일: 2021. 9. 16.

발 의 자: 추경호·김상훈·김선교

김용판 · 조명희 · 윤창현

김예지 • 이주환 • 성일종

엄태영 · 이종배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, 공장·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,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,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 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, 공장·학교 등의 급 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 임(안 제96조의3제1항, 제106조제1항, 제106조의7제1항, 제111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2호, 제3호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"를 "제3호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2호 및 제4호의5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"로,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"를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"로 한다.

제106조의7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11조의3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아 정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)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--2022년 12월 31일-----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간"이 라 한다)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(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)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
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다.

- 1. ~ 1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106조의7(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
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
반택시 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일반택시 운송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 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.

제3호 및 제9호는
<u>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</u>
것에만 적용하며, 제2호 및 제4
호의5는 2024년 12월 31일까지
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
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
1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게106조의7(일반택시 운송사업자
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
①
<u>2024</u>
년 12월 31일

② ~ ⑧ (생 략) 제111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 저 별소비세 등의 감면) ① 「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 2항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 월 31일까지 공급하는 「개별 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 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 (이하 이 조에서 "부탄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 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. ② ~ ⑩ (생 략)

	(2)	\sim	(8)	(연행	깍	せき	分)	
제	111	조.	의3(택시엄	년 료	에	대한	개
	별:	소비	세	등의	감	면)	1 -	
						20	24년	12
			10					·
	2	\sim	(II)	(현행	<u> </u>	ぜき	」)	